

화평법 (K-REACH)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면제에 대한 정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2015년 1월 1일부로 한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화평법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며, 화학물질의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 수입량에 따라 등록, 신고 또는 면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화평법에서는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 신고 또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유예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늦은)사전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와이케이코리아 유한회사는 해외 BYK 제조법인의 OR로 선임 받아 아래와 같은 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으로 수입되는 BYK 제품에 함유된 기존화학물질의 (늦은)사전신고
-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록, 면제 업무
- 기존 신고, 등록, 면제 승인에 대한 변경신고 (수입자등록)

OR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해 BYK 제품 또는 BYK 제품을 함유한 최종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아래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 수입자 정보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수출국)
- 수입되는 BYK 제품의 예상되는 연간 수입량 (톤)
- 고객사 최종 제품내에서의 BYK 제품의 용도

해당 정보는 당사의 웹폼 (<https://www.byk.com/BRIEF-Team>)을 통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고객사 입장에서 가능한 적은 노력으로 BYK 제품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수입 혹은 수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고객사에서 화평법 상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BRIEF Team
BYK Korea LLC.
www.byk.com/BRIEF-Team